

옥천군의회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의회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이의순, 곽봉호 의원

3.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

4. 주요골자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안제4조)

-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 의원이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함에도 회피하지 않으면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제4조의2)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제4조의3)
 -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그 행위 등을 중지·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가족 채용 제한(안제4조의4)
 - 의원은 옥천군의회, 옥천군 및 산하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제4조의5)
 - 의원은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알선·청탁 등의 금지(안제8조의2)
 -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음
 -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음
-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제10조의2)
 - 의원은 직무권한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할 수 없음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안제10조의3)
 - 의원은 직무권한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음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안제16조)

-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 의장은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5. 근거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

6. 참고사항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7.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회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3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 이 의 순 의원)

발 의 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발의년월일	2019. 4. 5.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단체”를 각각 “법인·단체”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제2조제1호다목 중 “단체”를 “법인·단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강령에 따라 처리”를 “강령을 적용”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을“(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4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

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단,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군 및 군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군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중 “옥천군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천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를 “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친족”을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옥천군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항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

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군 또는 군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제4항 중 “별지 제2호”를 “별지 제5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사전”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으로, “기관·단체”를 “기관·단체”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명하게”를 “분명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중 “별지 제5호”를 각각 “별지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장”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10호”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초과사례금”으로 한다.

제15조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서면으로 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금전 거래 등 제한)”을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

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구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경조사의 통지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의장”을 “별지 13호 서식에 따라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본”을 “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2조”를 “제21조”로, “자문할 수 있다”를 “자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2조”를 “제21조”로, “대하여”를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확인하면”을 “확인한 경우에는”으로, “받”을 “제출받”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를 “별지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2호”를 “별지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13호”를 “별지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별지 제14호”를 “별지 제17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인 이상 9인”을 “7명 이상 9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군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명”을 “미리 지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위원회의”를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안에 관하여”를 “사안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해관계자와”를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하여”를 “대한”으로, “한”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위원이 되기 전에”를 “위원이”로, “관여한”을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관여하거”를 “관여하고 있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이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를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로, “공정하게”를 “공정하게 업무를”로,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를 “자문위원회 회의를”로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27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요청하거나 옥천군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을 “요청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 중 “자문”을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9조의 제목“(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를“(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위원은 그”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수당 및 여비)”를“(자문료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에서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제목 외의 부분 중 “행동강령”을 각각 “강령”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	--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의2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청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	--

활동사유 및 경과	
-----------	--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	--

활동기간	. . . ~ . . . (일간)
------	---------------------

활동지역 (방문기관)	
----------------	--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참가자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의원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	--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제14조제7항, 제20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제15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	----	-------	-----

신 고 사 항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물품 계약

용역 계약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원인	
-------	--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 금액	
-------	--	-------	--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 소명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연락처	
	소속위원회 (정당)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일시			
위반행위	장소			
내용	내용			
증거자료 목록 비고	※ 증거자료 첨부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제공한 자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제20조제5항 본문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인도자 소속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서식] (제20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직무관련자"란 옥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u>단체</u>를 말한다.</p> <p>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u>단체</u></p> <p>나. <u>옥천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u></p> <p>다. 그 밖에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p>	<p>제2조(정의) ----- -----.</p> <p>1. ----- ----- ----- ----- ----- ----- <u>법</u> <u>인 · 단체</u>----- -----.</p> <p>가. ----- ----- ----- ----- <u>법인 · 단체</u></p> <p>나. <u>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u></p> <p>다. ----- ----- -----</p>

는 단체

2. (생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생략)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 법인·단체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강령을 적용-----.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
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
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
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
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
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
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
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
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
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
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

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
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
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전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
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신 설>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전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 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신 설>

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운영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 관·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단,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 설>

<신 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
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하여 옥천군 의
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군 및 군의 산하기관(「공
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
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군의 산하기관과 물품·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
수관계사업자가 군의 산하기관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의회 -----

-----.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옥천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생략)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옥천군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1. (현행과 같음)

2. -----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회-----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항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 · 경매 · 연구개발 · 시험 · 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 · 법인 · 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 교환 · 사용 · 수익 · 점유 · 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 ·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 법인 · 단체가 선정 · 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 · 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

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군 또는 군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생략)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

----- 별지 제5호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
----- 기관·단체 ----- 분명하게 -----

② -----

-----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

----- 별지 제8호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별지 제8호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
-----.

⑦ -----
----- 별지 제10호 -----

-----.

⑧ (생략)

제14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4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
----- 초과사례금-----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

----- 별지 제11호서식-----
신고-----.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외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

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신 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 4. (생략)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

-----.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 별지 13호 서식에 따라 의장 -----.

② -----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

----- 제21조

---- 자문하여야 한다.

④ ----- 제21조-----

----- 관한 -----

-----.

⑤ -----
----- 확인한 경
우에는 -----
제출받-----

-----.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 별지 제14호 -----

-----.

1.·2. (생략)

② (생략)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생략)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10호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별지 제15호 -----

-----.

1.·2. (현행과 같음)

3. -----

----- 별지 제16호 -----

4. (현행과 같음)

⑥ -----

2. 옥천군의회의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총수(數)는 전체 위원 수(數)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계·언론계 등으로부터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삭 제>

<삭 제>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자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⑤ -----

---. <단서 삭제>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생략)

<신설>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⑥ (현행과 같음)

⑦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 ① -----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② -----

----- 미리 지명-----
-----.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

----- 자문위원회
-----.

1. -----
----- 사안의

2. ----- 이해관계
자와 제7조제2호의 -----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3. ----- 대한 -----
----- 하고 있거나 하였던 -----

4. 위원이 -----
-----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

5. ----- 관여하고 있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 공정하게 업무를 -----
----- 자문위원회 회의를 -----.

제2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석의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옥천군 의회사무팀장으로 한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27조(의견청취 등) ① 자문위원회-----

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옥천군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수당 및 여비)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요청할 -----

-----.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
자문위원회 -----
-----.

제29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그 -----
-----.

제31조(자문료의 지급) -----
---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

-----.

제32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
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
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
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신 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

----- 강령 -----

----- 강령 -----
-----.

제34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
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
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
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
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
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구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
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
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

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